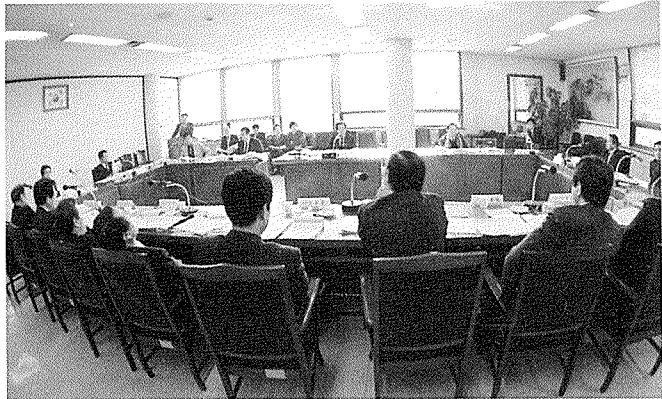


'91년도 제1회 理事會 개최



本協會 '91년도 첫 理事會 가 吳雲東 회장 주재로 지난 16 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91년도 기본운영계획(안) 승인」 등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이날 심의된 주요 부의안건의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회 理事會)

- 참여이사 직무규정(안) 승인
- 참여이사의 임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술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승인
- 지부명칭변경 사용범위 결정
- 지부명칭변경사용은 건축사법 및 정관개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하되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부와 협의하여 건축사법 및 정관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함
- '91년도 기본운영계획(안) 승인

- '91전국건축사대회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연수 및 대회일자를 수정하고 기타 각 위원회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추가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
- 위원회 조직 및 위원 선임
 - 〈별표 참조〉
 -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조정(안) 승인
 - 추후 재협의키로 함
 -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인증비 기준변경(안) 승인
 - 건축사의 직접인증비를 현행 7만9천원에서 8만3천5백원으로 5.7% 인상하는 등의 원안대로 승인
 - 회관 임대·관리비 인상조정(안) 승인
 - 본협회 회관 임대료 및 일반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키로 함
 - 여비규정·보수규정 개정(안) 승인
 - 각종 회의참석거마비와 심사비 등을 현실화하여 인상조정키로 함

'91위원회 조직

(위원장)
▶ 윤리위원회 金伸宰
▶ 홍보·편찬위원회 李義求
▶ 법제위원회 韓奎峯
└ 특별전형대책위원회 金椿培
▶ 건축1위원회 朴成圭
└ 설계감리분과위원회 朴商浩
└ 구조시공분과위원회 李用夏
└ 설계경기운영분과위원회 權泰政
▶ 건축2위원회 禹南龍
└ 에너지설비분과위원회 金鎮成
└ 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宋良漸
└ 전통건축분과위원회 康祐植
▶ 전문감리위원회 金榮洙
▶ 연수위원회 李京男
▶ 국제위원회 金知德
▶ 세무위원회 趙相鎬
▶ 재건축심의위원회 張城鎮
▶ 업무전산위원회 安永濬
▶ 예산편성위원회 金正洙
▶ 연금운영위원회 會長 姜基世
└ 연금연구위원회 姜基世
▶ 회원업무조정위원회 미정 金榮洙
▶ 전국건축사대회 집행위원회 金漢根
└ 기획분과위원회 金漢根
└ 재정분과위원회 姜基世
└ 진행분과위원회 金永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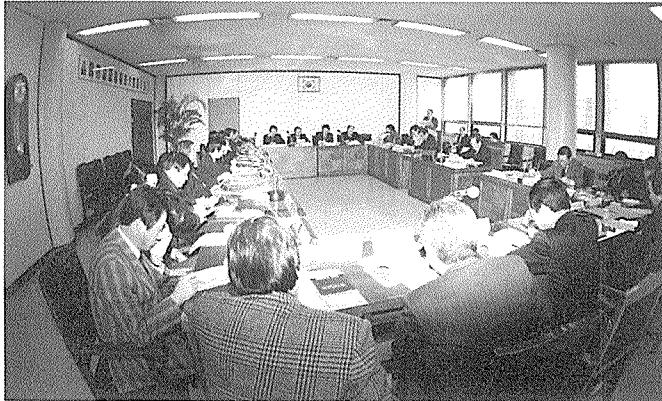
제1회 자문위원회

본 협회 자문위원회의 '91년도 제1회 회의가 지난달 11일 협회 회장실에서 張起仁 前회장(2대회장 역임)의 주재로 개최되어 협회 주요 당면사항을 협의하였다.

임원협의회 개최

본 협회 임원협의회가 지난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실적회비 산출기준표의 조정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제1회 支部會長會議 개최



'91년도 제1회 지부회장회의가 지난 15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협회주요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날 협의된 주요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회 지부회장회의〉

- 참여이사직무규정에 관한 협의
- 임원협의회 및 지부회장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여 자구수정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협의함

- 지부명칭 사용에 관한 협의 - 일단 건축사법이나 정관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명칭변경 사용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되 집행부에서는 빠른시일내에 관련법개정을 추진키로 협의함
- 실적회비산출기준표 인상조정(안)에 관한 협의
- 실적회비산출기준표는 정부건축공사비기준에 따라 조정하되 실적회비 징수율과 연금회비 징수율은 하향조정하고 '주'각항의 문구도 현실에 맞게 수정키로 협의함

서울기독건축사회 정기총회

서울지부소속 기독교인 건축사들의 모임인 서울기독건축사회 제4회 정기총회가 지난 31일 협회강당에서 개최되어 신임회장에 엄기철회원, 부회장에

강태성, 이현삼, 김창근회원을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하고 건축사선교사업등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建築士」는 회원들의 言路입니다 !

본 협회會誌인 「建築士」는 3천5백여 회원여러분들의 作品과 연구물, 의견등에 대하여 항시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를 기원합니다.

實績會費 算出基準表

1991. 3. 1 시행

(단위 : 원/m²)

구조별	① 목 조	② 붉은벽돌조 PIPE구조	③ 철근콘크리트조 P.C조	④ 석 조	⑤ 일 반 철 골 조	⑥ 고층철골 철 골 조(10층 이상)	⑦ 특 수 구 조
제1종	125,600	147,400	—	—	—	—	—
제2종	169,300	231,100	271,200	300,300	322,100	325,800	본공사는 실산 공사비에 의함
제3종	202,000	262,100	300,300	331,200	338,500	345,800	*
제4종	227,500	264,600	360,400	393,100	—	—	*
제5종	—	—	—	—	—	—	—

1. 설계감리 보수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사비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다.
2. 실적회비 징수율은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별표1의 설계감리 보수액의 70%를 설계보수로 하여 동 설계보수액에 대한 %로 한다.
3. 제5종에 해당되는 설계감리의 실적회비는 설계감리 계약금액에 실적회비 징수율을 적용 산출한다.
4.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시멘트 벽돌조의 외장을 붉은벽돌 치장쌓기, 타일붙임, 대리석붙임. 이외 이와 유사한 마감(2면 이상)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5. 용도변경, 대수선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산 공사비에 의한다.
6. 헛간(벽체가 없는 건축물)은 위 금액의 30%를 공사비로 한다.
7. 제2항의 경량철골조는 콘셀 철골구조 및 PIPE 구조를 말하며 제7항의 특수구조는 셀 구조, 사일로돔 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를 말한다.
8. 단순한 면적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으로서 면적이 증가되므로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종별을 적용하여 전체 실적회비를 산출하고 변경전 징수금액을 제한다.
9. 단독주택은 지하층, 별동의 차고 및 변소 등의 면적을 제한 면적에 대하여 해당 종별을 적용하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으로 해당종별을 적용한다.
10. 본 공사비는 건축공사비에 한한다.

〈제2회 이사회 (91.2.5)결정사항〉